

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● 공 고 기 간 : 2015. 5. 13. ~ 5. 28. (15일간)

● 공고대상자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주 소
1	임 **	98.04.01	2015. 5. 1. ~ 2016. 4. 30.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7번길
2	진 **	98.04.02		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156번길
3	김 **	98.04.06	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
4	정 **	98.04.08	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17번길
5	권 **	98.04.19	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
6	위 **	98.04.22	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37번길

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이 슬 문의전화 : 560-3329)

2015년 5월 13일

가 좌 3 동 장

